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의 기본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15.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호나목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 및 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를 “나목에 따른 재산”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재산”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2월 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② (생략)</p>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가. <u>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u></p> <p>나. <u>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u></p> <p>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p>	<p>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2.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 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생략)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6